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2)

연구원 류 정 우*

지난호에 이어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와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 및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이번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GATS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무역 다자규범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목 차

지난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도 입 II. 전자상거래와 통상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상문제의 본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통상문제의 종류 3.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통상문제 4.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 |
|--|--|

이번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WTO 다자간무역협정과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상거래와 GATS 가. GATS의 구조 나. 분야별 검토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대상 2) 적용조건 3) 주요원칙 4) 적용배제 |
|---|--|

다음호

- 2. 전자상거래와 상품무역 협정
- 3. 전자상거래와 TRIPS
- IV. 종합결론 및 전망

연락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570-4435, jungwoo@sunnet.kisdi.re.kr

홈페이지: <http://sunnet.kisdi.re.kr/~jungwoo/index.htm/>

Ⅲ. WTO 다자간무역협정과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와 GATS¹⁾

가. GATS의 구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에 적용되는 다자간 통상규범으로 WTO 창설협정에 부속되어 있다.²⁾ 우루과이라운드 과정을 통해 새로이 제정된 GATS는 기존 상품무역에 적용되어 온 GATT를 모델로 하여 최초로 마련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다자간 국제규범이다. GATS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표 1〉 GATS의 구조와 관련규정

구 성	내 용	세부주제	관련조문·항목
적용대상	정 의	서비스의 공급, 서비스의 교역	GATS I ; 관세
	범 위	GATS의 적용 범위	
적용조건	구체적약속	서비스 항목	서비스 분류 문제
		시장접근 제한	GATS XVI
		내국민대우 제한	GATS XVII
	추가적 약속	GATS XVIII	
양허의조정	점진적 자유화	GATS XIX, XX, XXI	

1) 본고는 WTO 전자상거래 Work Programme에 따라 개최된 GATS이사회 비공식회의의 결과와 회의 과정 또는 준비과정에서 제시되거나 제출된 개별 회원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종합하였다. GATS 이사회의 최종보고서가 일반이사회에 제출된 것은 1999년 7월이지만 그 이후 12월에 개최된 시애틀 각료회의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다. 회의 진행 및 결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주제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대부분 이어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는 대체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제별 문제의 소재와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견해 그리고 반론이나 소수의견을 논의의 흐름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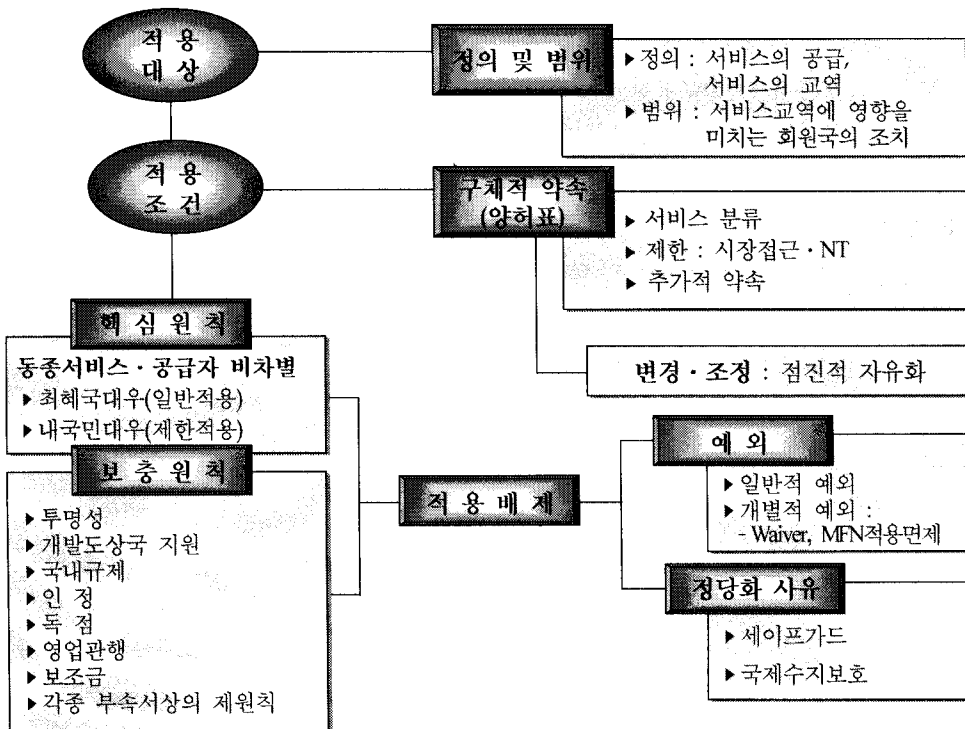
2) 부속서 1B.

3) 지면 관계상 이하 논의될 주제에 대한 관련조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조문 원문은 WTO 공식 홈페이지의 협정문 관련 링크(<http://www.wto.org/wto/legal/legal.htm>) 참고.

구 성	내 용	세부주제	관련조문·항목
주요원칙	핵심원칙	최혜국대우	GATS II
		내국민대우	GATS XVI, RP
	보충원칙	투명성	GATS II
		개발도상국 지원	GATS IV
		국내규제	GATS VI
		인정	GATS VII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GATS VIII
		영업관행	GATS IX
		부속서상의 제반 원칙	통신부속서
적용배제	예 외	일반적 예외	GATS XIV
		개별적 예외(Waiver, MFN면제)	MFN 면제 부속서
	정당화사유	세이프가드	GATS X
		국제수지보호	GATS XII

이러한 GATS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GATS의 구조



나. 분야별 검토내용

1) 적용대상

① GATS의 적용범위

GATS의 적용대상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이다.⁴⁾ 서비스무역은 4가지 유형(국경간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의 서비스공급으로 정의되며⁵⁾ 정부의 ‘조치’에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밖의 형태의 여부에 관계 없이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⁶⁾ 그러나 GATS에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으며 다만 양허표의 작성을 위해 개방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UR부터 UN CPC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활용하였다.

문제의 소지는 이러한 체계 내에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적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법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에 있다. 즉 전자적 전달을 통한 무역이 서비스무역인가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이 GATS의 적용 대상인가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은 GATS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4가지 공급형태 모두에서 전자적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모든 전자적 전송에 대해 GATS 적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적용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는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아르헨티나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에 대해 GATS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모든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주요 원칙과 규칙을 구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② 정의 규정

GATS I:2조에서는 ‘서비스무역’을 다음 4가지 유형(국경간공급,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자연인의이동)의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국경성(borderlessness)은 GATS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을 통한 서

4) GATS I:1조.

5) GATS I:2조.

6) GATS XXVIII 조.

스의 제공을 국경간공급과 해외소비 중 어느 형태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1) 국경간공급과 해외소비 공급방식의 통합; (2) 양자 중 해당 방식의 선택; (3) 새로운 공급양식 도입; (4) 부속서 또는 각료선언 등 부속문서의 채택을 통한 구체화 등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전자적 전송이 국경간공급 또는 해외소비 중 어느 범주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Consensus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만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의한 상태이다.

③ 관 세

관세는 전통적으로 상품의 수출입과정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확대와 인터넷의 이용 증가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로 보기 힘든 새로운 유형의 재화(디지털 재화)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지난 1995년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원인의 하나가 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3차 WTO 각료회의까지 잠정적인 비과세원칙을 각료선언으로 채택한 바 있었다. 하지만 각료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현행 비과세원칙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관세와 관련된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관세 부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전제로서 서비스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및 전자적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합의된 공통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에 대한 관세 적용문제에 대해 상반된 다양한 입장이 혼재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전자상거래와 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관세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문제가 될 뿐 GATS 전반에 걸쳐 관세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서비스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전자적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standstill에 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현재의 합의를 영구화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분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standstill 합의의 연장 논의는 불가하다는 반론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고려하여 standstill 합의 연장문제와 분류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합의 연장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기술중립성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2) 적용조건

① 서비스의 분류

현재 GATS의 양허표는 UN CPC(Code of Product Classification: CPC)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무역협상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서비스 분류방식⁷⁾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UN CPC 체계 자체가 매우 오래된 분류방식으로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달해 온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규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분류체계의 부적합성 및 개정 필요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선, 전자적 전달물의 서비스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상품의 대부분은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모든 전자적 전달물을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몇몇 특정 상품의 경우 전자적으로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상품으로 분류되어 GATT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여 몇몇 전자적 전달물은 상품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운로드된 제품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제3의 재화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신규서비스 인정·추가 여부에 관해서는, 전자적 전달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서비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호주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등장하게 될 신규서비스는 전자적 거래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 정도의 매우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인증 서비스가 이미 은행에 의해 수년 전부터 제공되어왔기 때문에 신규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적도 함께 제시되었다.

② 시장접근

네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급이 모두 전자적 전달을 통해 가능해 지게 됨에 따라,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서비스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이나 각종 접근조건들의 효력이 전자적 전달을 통한 제공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판단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Internet Access Services: 국내에서는 I.P가 해당됨)의 양허여부 판단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접근에 관한 별다른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이상 전자적 전달을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은 양허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견해로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7)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Document MTN. GNS/W/120

부가통신서비스 양허협상에서 비규제 대상 서비스를 모두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여기에 인터넷접속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양허 여부는 양허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 서비스가 양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의 양허표만으로는 인터넷접속서비스 분야를 자동적으로 양허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인터넷 백본망 서비스로 구별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자체를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독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③ 추가적 약속 : 양허표 Reference Paper

Reference Paper는 기본통신서비스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공정경쟁 확보의무 준수를 위한 회원국의 의무를 담고 있는 문건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양허표상 추가적 약속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확대 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등장과 성장은 우루과이라운드와 기본통신서비스 협상 과정에서 동 분야가 어느 서비스로 분류되어 양허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용 규범의 선택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빚게 되었다. 즉 현재 회원국내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강화를 위해 채택되었던 Reference Paper가 전자상거래 분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가의 여부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유럽연합은 Reference Paper의 경쟁조치 세이프가드 조항을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해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하였으나 이에 반해 일본은 RP가 원칙적으로 기본통신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문건이므로 이를 전자상거래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폈다.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는 RP의 확대적용은 물론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자동적인 양허 인정도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3) 주요 원칙

① 핵심원칙

㉠ 최혜국대우

WTO체제의 핵심 운영원칙은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이며 비차별원칙의 중핵을 이루는 요소가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에도 기술적 중립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라도 법제도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기본 조건은 '동종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GATT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종성'(likeness)을 적용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

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적용 문제는 동종성의 판단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선 최혜국대우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MFN 의무를 포함한 GATS의 모든 일반적인 규정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이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동종성(likeness)의 판단문제에 관하여, 동종성 문제의 중핵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서비스와 기존의 수단을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전달된 서비스간의 동종성 인정 여부에 있다. 동종성문제는 GATS뿐 아니라 GATT에서도 회원국 의무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사안이며, GATT 하에서는 동종성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case-by-case' 원칙이 지속적인 패널 평결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동종성문제는 WTO 법리 중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원국간 전자적 전달에 관한 동종성 기준의 Consensus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럽연합은 서비스 분류와 공급모드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이사회가 서비스의 전달 수단의 차이가 동종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만일 동종성에 관한 Consensus를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 내국민대우

앞서 논의된 최혜국대우의 적용과정에서 문제되는 모든 내용이 내국민대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MF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허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NT 규정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단 GATT와 GATS에서 NT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⁸⁾ 이 점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동종성 구별 등 기타 논점에 대해서는 MFN의 경우와 동일한 입장이 견지되었다.

㉡ 보충원칙

㉢ 투명성

투명성 원칙은 서비스무역은 회원국의 규제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GATS의 핵심원칙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투명성 원칙이 전자상거

8) GATT에서의 내국민대우는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GATS에서는 구체적 약속의 일부로서 회원국간 양허협상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건부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 양허에 일정한 조건이 부가될 경우 조건의 이행 또는 적합성 문제는 국내규제(GATS VI조) 상의 원칙 준수 여부와 맞물려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성격이 바뀐다. GATS XVII:1조 참고.

래 분야에 확대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다. 큰 쟁점이 있는 분야라기 보다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투명성 원칙의 확대적용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투명성 원칙도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법률과 규칙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개발도상국 지원

개발도상국의 참여확대 문제는 제3차 WTO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개도국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분야이다. WTO창설협정은 물론 GATT와 GATS, TRIPS 모두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선진국들의 기여 및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WTO창설 이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선진국들의 월등한 자본력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적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참여 확대 관련 이슈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에 바탕을 둘 수 밖에 없는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속성상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협력의 수준이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또는 개도국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혜택의 수요를 어느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하는 협력 수준 결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참여 확대는 GATS IV조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개도국들에 대한 수출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 암호 및 보안에 관련된 최신 기술 또는 효율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등에 대한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주장에 대해서 일부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유지하고 있는 최신 암호기술의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GATS XIV 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보상의 예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국내규제

국내규제 규정은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차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문의 구성요건 자체가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자상거래의 도입에 따른 변화된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도입된 각 회원국들의 국내규제가 GATS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WTO차원의 이익과 국내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권리보장 요구간 합의점 도출 문제가 국내규제 관련 이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러한 균형유지는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규제 관련 규정인 GATS VI조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규제 관련 문제의 핵심은 국내 경제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 정부의 권리와 해당 규제의 불필요한 무역장벽화 방지를 위한 의무간 균형 유지에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S XIV조의 내용과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VI:4조에 근거하여 GATS 이사회가 제정할 수 있는 국내규제 관련 제반 원칙⁹⁾ 내용을 상호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회원국들은 GATS이사회가 VI:4조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원칙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브라질이 현 상태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국내규제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은 VI조의 기능이 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지는 것이지 정책 목적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분야에서 규제를 허용하는 정책목표의 내용을 나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국내규제의 수준 및 원칙의 적용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합법적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 독점·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및 영업관행

GATS VIII조는 국가 정책목적상 독점을 허용해 온 산업분야의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당해 시장 내 기존의 독점 사업자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개방 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회원국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방관함으로써 양허표를 통해 제시된 시장개방 조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회원국 정부의 극단적인 행태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정부주도 국가독점 사

9) GATS VI:4조에서는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GATS이사회로 하여금 관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GATS이사회가 제정할 수 있는 원칙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우 이러한 독점 관련 규정은 각 회원국 정부와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간의 미묘한 갈등관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한 차별 문제는 심각한 무역장벽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GATS IX 조는 VIII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들의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도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회원국 정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종요소간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수단이 되거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비독점적 사업자의 무역장에 사업관행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서비스 공급자들의 시장접근 기회 확대는 기존 기업들의 제한적인 사업관행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독점이나 제한적 사업관행은 전자상거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GATS 원칙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되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쟁조치 세이프가드(예: 상호접속)나 Reference Paper에 규정된 바 회소자원의 분배 등에 관한 원칙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RP의 경쟁조치 세이프가드는 주요 기본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적용되는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주요 기본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포함하여 유통체계와 정보망에 대한 접근 개선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통신부속서

통신부속서는 양허된 기타 서비스분야의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공중통신전송망이나 공중통신 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제약을 통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GATS의 핵심원칙의 하나인 내국민대우 원칙의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문서이다.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터넷의 활용이 폭증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들은 인터넷망이나 인터넷 서비스의 활용 없이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인터넷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특정 조치가 무역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부속서의 적용 범위를 인터넷망이

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통신부속서 본래의 입법취지나 적용범위 규정 등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확대적용은 부적합하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망의 물리적 특성이나 구현기술 방식 등에 대한 인지도 또는 이해방식이 국가의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르며 인터넷 망이나 서비스를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도 상이하기 때문에 차후 지속적인 협의를 요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망이 통신부속서상의 공중통신전송망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경우 통신부속서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GATS 통신부속서 적용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망 및 관련 서비스를 부속서상의 공중통신전송망이나 공중통신 전송서비스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수준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통신부속서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제공자들의 공중전기통신망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지만, 인터넷망을 공중통신전송망으로 인정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까지도 보장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4) 적용배제 : 일반적 예외

GATS XV조에서는 GATS상의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규정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총칙규정과,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등 세부적인 제한 목적을 참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은 지금까지의 GATT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예외를 주장하는 회원국이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 역시 매우 과중한 것이어서 실제 적극적으로 원용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적 예외에 속하는 보호대상이 대부분 사회·문화적인 관념이나 요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용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회원국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만행위나 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의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국이 도입하는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라이버시, 공동도덕 보호, 사기 방지 등을 위한 회원국의 조치가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음호에 계속 -

참 고 문 헌

- [1] WTO창설협정 및 부속서
- [2] WTO 문서, WT/DS75R, WT/DS84/R(1998. 9. 17),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 [3] _____, S/C/W/115/Rev.1(1999. 7. 20),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 [4] _____, S/C/M/37(1999. 6. 20),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2 and 24 June 1999
- [5] _____, G/C/W/128(1998, 11. 5),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 [6] _____, Job No. 4289(1999. 7. 20), Draft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 [7] Lee Tuthill, "E-Commerce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 Ideal Match?", World Trade Brief, Agenda Publishing Co., 1999. 12
- [8] William J. Drake, "Global Electronic Commerce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the "Millennium Rong" and Beyond", Paper for World Service Congress 2000, 1999. 11
- [9]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통상법제브리핑 1999년 각호
- [10] 박노형, GATT체제하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영사, 1994년
- [11] _____,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6년
- [12]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년